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04 발의연월일: 2022. 11. 4.

발 의 자:김영선·김상훈·이명수

김정재 · 최영희 · 서일준

서범수・윤상현・조명희

임병헌 · 하영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이 외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하여 발생하였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1m^2$ 당 $3\sim4$ 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경고하도록 하고, $1m^2$ 당 $5\sim6$ 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동 감소 방안,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자발적 참여 등으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1. 1m²당 3~4명의 밀도일 경우 주의, 경고
- $2. \ 1m^2$ 당 $5\sim 6$ 명의 밀도일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3.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 4.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 5.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6.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 7.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8.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첫 체	게 져 아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 ④ (생 략)	전관리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⑤ 자발적 참여 등으로 극도의
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
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	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축제 <u>안전</u>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u> </u>	
	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의 내용, 수립절차 등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1. 1m²당 3~4명의 밀도일 경우
	<u>주의, 경고</u>
	<u>2. 1m²당 5∼6명의 밀도일 경우</u>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3.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
	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
	<u>소 방안</u>

- 4.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 5.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6.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

 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 7.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u>방안</u>
- 8.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 전 협의 방안